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평생교육 현황과 실천적 과제 고찰

김도경*·한태경**

인간은 가치 있는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진심으로 몰두하여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 있는 활동을 모색하고 선택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특히 중장년 여성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경력 단절 문제 해결,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평생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중적 차별구조에 놓여있는 중장년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주체적 삶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평생교육 및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고서와 존 화이트·섬너의 삶이론 관련 학위 및 학술논문을 고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을 통해 평생교육팀 운영자와 여성 장애인 대상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관련 내러티브 내용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을 위해 실제 교육 운영 현장의 실천적 과제를 모색 및 제안하였다.

주제어 :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적 삶, 이중차별,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학부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학부

I. 서론

학습함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습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부분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로써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에 비추어 보아 「헌법」 제31조 1항(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주목해보면 진정한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은 개별화된 효율성이 실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도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이라는 의미는 장애인에게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개발원(2020) 평생교육 참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해 98.4%가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50.9%가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인간은 성과 나이, 장애 유무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삶의 전반에서 학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의 총체적 원형은 평생교육이다. 한준상(2003)은 평생교육을 모든 이를 위한 ‘앎’, 모든 이를 위한 ‘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를 위한 ‘높’의 문화적인 토대이자 기능이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는 평생교육 활동과 실천을 통해 자기 부족과 결핍을 메워가는 배움에서 나아가 개인의 배우고자 하는 본능과 자의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자기를 위한 삶,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현 및 인식 결과와 반대됨을 볼 수 있다. 장애인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평생교육의 예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조건의 평등화와 접근성이 고려된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반드시 지원 및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에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성별,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한 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의 성과 장애는 사회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한계는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한을 불러오고 여성 장애인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접촉과 관계망 형성을 좌절시킨다. 물리적 장애물, 사람들의 시선,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그리고 축소된 사회적 기회는 여성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참여로부터,

지지와 친밀감의 대상으로부터, 고용기회로부터, 건강증진 기회로부터 단절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주류로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Nosek & Hughes, 2003; 배화옥, 김유경, 2009). 본 연구는 특히 여성으로서의 차별(sexism)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disablism)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오혜경, 2016)의 평생교육 운영에 주목하였다. 전해숙(2007)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 여부가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양태에 영향을 미치기에, 개인 중에서도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위와 같은 법률안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인간 존엄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여성경제활동법」(법률 제18549호)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하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 시책으로 제13조(직업교육훈련)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 등의 경력 단절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보다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더 낮은 추이를 보인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또한 비슷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의 유입 자체가 장애남성, 비장애남성,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오혜경, 2016). 또한,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 장애인보다 2배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0.7%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수적으로 남성 장애인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측면 등 상대적으로 정책적 측면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접근만으로는 여성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해내기 어려우므로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에 주목한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저학력 현상은 경제활동 참여를 막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참여 배제라는 현상을 낳는다(강민희, 2011).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저학력 및 사회참여 배제 현상은 여성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에게 생애에 걸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를 통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학습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권정숙, 정여주, 2015). 박원희(2002)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일반인의 평생학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생의 수단이자 목표이며,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은 장애인 복지가 성취된 현실적 완성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에게 있어 배움은 기존에 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자체가 주는 보람에서 느끼는 행복 추구가 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적 차별구조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행복추구권이며 장애인 교육 및 복지의 완성 척도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 보다 실용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지원이 더욱 다양화 및 심화되어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이에 ‘모두를 위한 교육’을 표방하는 평생교육 정신에 입각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사회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내 이루어지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및 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천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으로는 화이트와 섬너의 잘살론,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이 제시된다. 장애인, 그리고 여성 장애인이 잘살을 영위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화이트와 섬너의 잘살론을 조사 및 적용해보고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였다.

1. 화이트와 섬너의 잘살론

인간은 혼자서 잘살을 도모할 수 없다. 잘살은 가정, 이웃, 도시, 국가, 혹은 세계 공동체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잘살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한기철(2015)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교

육의 원래 목적은 국가 구성원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교육은 이념적으로 모든 국가 구성원의 복리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여기서 국가 및 국가교육은 행복한 삶 혹은 복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사회’라는 용어에서 ‘민주주의’란 국가를 통해 발휘되는 정치적 권력에 대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유’란 이러한 민주주의 안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모든 국민이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잘살을 위해 수행해야하는 역할은 국민이 각자 잘살의 이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중립적 틀’을 보장함으로써 기본 도덕이 준수되고 기본 복지가 제공되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국가가 국민의 잘살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것을 요청한다(이지현, 임현정, 2017).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덕 윤리학이나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잘살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철학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그리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가 근본주제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잘살이란 무엇인가? ‘잘살’ 개념의 경우 많은 연구자의 논문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주제가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살을 위한 평생교육’인 만큼 화이트의 ‘잘살을 위한 교육’과 섬너의 ‘삶의 주체에서의 잘살’을 분석하고자 한다.

화이트(White, 2013: 541)는 잘살을 두 개의 층을 나누어 밝혀냈다. 잘살의 한 층은 ‘기본적 필요의 충족’이며, 또 다른 층은 ‘가치 있는 추구’를 가리킨다. 즉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추구가 가능한 삶이 잘살이다. 기본적 필요는 잘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 필요는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잘살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 요건’으로 이해된다. 화이트는 기본적 필요에 속하는 것을 물질적/신체적 요건¹⁾, 실천적 요건²⁾, 사회적 요건³⁾, 운명적 요건⁴⁾ 등으로 폭넓게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는 삶을 가리

-
- 1) 물질적/육체적 필요로는 음식, 물, 주거, 의복, 수입, 운동, 건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습관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 2) 실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는 실천적 지능과 판단력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단-목적 관계에 관한 유연한 사고 능력, 가치 갈등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그리고 정서 및 육체적 욕구에 관한 적절한 자제력 등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 3) 사회적 필요에 속하는 것으로는 평화, 자유, 생태학적 위기극복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 관심이나 사회적 행동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 4) 불의의 사고나 자연적 재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운명으로 돌릴 수밖에

켜 잘살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화이트가 말했듯이, 기본적 필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추구가 가능한 삶을 잘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잘살을 형성하는 또 다른 층인 '가치 있는 추구'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추구란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을 가리킨다. 잘살의 핵심은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에 있으므로 화이트는 '활동', '가치', '성공', '전심'을 중심으로 잘살을 상세하게 탐색한다. 첫째, '활동'이라는 요소는 잘살을 활동적 삶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이트의 교육관에서 '가치 있는 활동'은 지적 혹은 학문적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더 폭넓은 활동⁵⁾을 포함시킨다. 둘째, '가치'라는 요소는 잘살을 구성하는 활동이 가치 있는 것임을 가리킨다. 여기서 가치 있는 활동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즉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⁶⁾을 가리킨다. 셋째, '성공'이란 7)개인이 참여하는 활동 및 관계가 요구하는 기준들이 적절하게 충족됨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 성공적일수록 개인의 삶을 잘살에 가까워진다. 성공은 실패와 병행한다. 따라서 성공은 늘 이기는 것, 언제나 승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성패의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주관적 요소는 주관적 행복관, 즉 삶의 만족을 중시하는 행복관과 일치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전심'이란 온 마음으로 몰두함 즉,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이나 관계에서 요구되는 목표를 향해 자신의 행위를 이끌어 가는 것, 자신을 바치는 것, 온 마음을 쏟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전심은 추구하려는 활동과 연관된 특별한 태도, 헌신, 순수한 동기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잘살을 위해 전심이 중요한 이유는 전심으로 몰두하는 활동이나 관계에서 즐거운 경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심으로 몰두함으로써 즐거운, 쾌락적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전심으로 몰두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 혹은 관계는 개인이 정말 좋아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요컨대 아무리 가치 있는 활동이라도 피곤하게, 무심하게, 의무 때문에 건성으로 행한다면 잘살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를 원한다. 무의미하고, 헛되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은 거의 없다. 타인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행복이 도외시당하는 것을 수용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이지현, 임현정, 2017).

섬너는 좋은 삶과 잘살을 서로 구별하며 현대적 의미의 잘살 특성을 밝힌다. 섬너(Sumner, 1

없지만, 오늘날 지구적 차원에서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 5) 불교적 명상에 잠기는 것,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 것, 친구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것, 학교가 잘 돌아가도록 애쓰는 것,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 등
- 6) 가족을 위해 힘쓰거나,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주말에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 7) 축구를 하면서 공을 제대로 차고, 팀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더 많은 공을 넣고 이기는 것(시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시인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친구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과 사귀면서 우정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996: 20-25)에 의하면 좋은 삶은 가치 있는 삶이며, 좋은 삶의 가치는 타산적 가치, 미적 가치8), 완전성의 가치9), 도덕적 가치10)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섬너(Ibid., 20)에 따르면 ‘잘삶’은 좋은 삶의 타산적 가치를 가리킨다. 이것은 삶의 주체인 개인에게 그의 삶이 얼마나 잘 영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삶의 주체인 개인에게 좋거나 이로운 것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 개인의 잘삶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나의 삶이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가 하는 차원을 가리켜서 주체-관련성(subject-relativity)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잘삶의 핵심은 삶의 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 섬너(Ibid., 36)는 ‘개인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잘삶은 삶의 주체가 갖고 있는 ‘관심’에 의존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잘삶은 그가 갖고 있는 관심, 개인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각자의 삶의 조건(상태)에 대해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갖고 사는데, 이런 태도는 그런 삶의 조건이 그 삶의 주체에게 좋은가 혹은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주관적 관점에는 삶의 주체로서 개인이 갖는 관심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흥미, 경향, 감정 등이 반영될 것이다(이지현, 임현정, 2017).

2.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잘삶을 위한 잘삶론 적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잘삶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천 방향과 결과를 시사하여 주는 큰 개념이다. 특히 보호와 훈련 수준으로 만족하는 중도·중복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연구·검토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 Halpern(1994)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적·물질적 안녕, 다양한 성인 역할 수행 능력 및 개인적 충족감의 세 가지 영역으로 삶의 질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는 삶의 질을 개개인 자신의 관점에 따라 평가하는 주관적 차원과 본인이나 그 밖의 다른 사람의 견해에 준하여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삶의 질의 주관적 척도로는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을 포함하고, 객관적 척도로는 성숙과 숙

8) 인간의 삶은 미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간주하고 살 수 있다. 미적 감수성이 제대로 표현되는 멋진 삶은 미적 가치를 갖는다.

9) 삶의 가치는 완전성의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고유한 특성(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이 탁월하게 발현되는 삶일수록 완전성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지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며 살아온 사람들도, 그런 외길 인생보다는 차라리 여러 가지 관심을 폭넓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이었을 터인데 하며 아쉬워할 수 있다.

10) 삶의 가치는 도덕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윤리적으로 칭송한다.

달, 건강, 경제적 안정성, 환경의 질을 포함하였다(박원희, 2002).

장애인 또한 평등한 국민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잘’ 살아야 함을 보장받아야 한다. 화이트의 잘살론에 Halpern(1994)를 적용해보면, 1) 장애인은 잘살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물질적/신체적 요건, 실천적 요건, 사회적 요건, 운명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2) ‘활동’, ‘가치’, ‘성공’, ‘전심’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을 추구한다. 특히 개인의 잘살을 구성하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위해 자신의 중요한 욕구를 충족하며 진심으로 몰두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은 섬너의 타산적 가치에 근거하여 잘살에서의 ‘주체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 장애인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나를 위한’ 흥미와 관심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3.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말했듯,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보다 낮은 교육적 기회 및 취업 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의 사회·문화적 성숙의 기회와 역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관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2)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거하여 등록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이중 약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이 진행된다.

〈표 1〉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내용

구분	주요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 사후관리 -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 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역량강화 교육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구, 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자조모임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상담은 생애주기별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제반 문제의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출산·육아기 생활에 대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관리는 상담과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여성 중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여성 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에 기반한 개별계획을 수립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을 실시한다. 이때 지역사회기관 연계 서비스는 여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련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연계망을 구축하여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역

사회 내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 장애인의 정서 안정, 사회성 향상,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혹은 전문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아래의 표<5>와 같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예시)은 다음과 같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 가급적 자조 모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프로그램 참여 여성 장애인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정보를 나누며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자조 모임 지원을 진행한다. 더불어 장애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내면화, 교육과 노동 등 사회참여 기회 제한의 경우에는 멘토링을 통해 안내자, 역할 모델, 선생님, 스폰서가 되어 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

〈표 2〉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예시)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시
역량강화교육	기초교육중심형	검정고시반, 컴퓨터교육, 한글문예교육 등
	건강중심형	탁구교실, 건강교양강좌, 구강중진지원사업 등
	사회활동중심형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여성장애인리더십향상아카데미 등
	여가문화중심형	한지공예, 민요교실, 서예교실 등
	경제활동중심형	제과제빵 자격반, 바리스타 과정, 동료상담사 양성 등

앞서 화이트의 잘살과 섬너의 좋은 삶의 가치를 기반으로,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장애인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지역별로 장애인복지관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정보화 교육, 인권 교육, 직업 교육,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운영 현황 조사’라는 연구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고서를 통한 분석, 존 화이트와 섬너의 잘살 이론 관련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 등을 고찰하는 방법과 현장 방문을 통해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과 관련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운영자와 여성 장애인과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 및 전화로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7개를 선정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하여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면담은 2022년 8, 9월 중으로 진행되었으며, 2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운영 총괄(팀장), 평생교육팀 내 여성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여성 장애인 총 8명과 대략 각 2시간 정도의 복지관 개별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여성 장애인 대상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주제로 대상별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문항 영역별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언어 및 비언어적 메시지를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기 위해 현장 노트를 활용하였다. 내용 검토 및 추가 자료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2022년 9월 중 참여자 각자의 내러티브를 확인하며 전화와 메일을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3〉 반구조화 질문지 구성

대상	구분	하위영역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운영총괄/팀장	평생교육 운영 현황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구성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평생교육 관련 지역 연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지원 및 지정
		복지관 및 프로그램 모집 홍보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여성 장애인 대상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지원사업 비교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여성 장애인	교육과 차별구조	여성 장애인의 이중적 차별구조에 따른 교육 접근의 한계
	교육 수강 경험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현장 방문 및 심층 면담을 통한 내러티브 중 분석의 주된 대상은 00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운영팀장과 장애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을 수강한 여성 장애인이다. 여성 장애인은 중년층(5

0대) 뇌병변장애 여성으로 장애 당사자로서 10년 이상의 평생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으로 학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이해교육강사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웰빙, 자립적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운영팀장과 함께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실제 운영 현황을 이해하고 경제활동 촉진,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한 심층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 관련 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 대상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인터뷰 과정에서 반복적 연구 동의를 받았다. 심층 면접 대상자에게 먼저 연구 계획 및 목적을 구두 상으로 설명하여 연구 동의를 구한 뒤,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동의서에는 인터뷰 참여의사 확인과 답변에 있어 예견되는 불편감, 위험이 있을 경우 중단에 대한 설명 등의 서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서약을 엄두에 두고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범주적 내용분석

심층 면접 원자료인 2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운영총괄/팀장, 평생교육팀 내 여성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여성 장애인 총 8명의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운영 현황에 관한 내러티브'를 중심 주제, 핵심 범주, 하위범주로 분류 및 그룹화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적 내용을 도출하였다.

중심주제	핵심범주	하위범주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교육 운영 현황	평생교육팀 교육 운영 목적 및 역할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평생교육 운영상의 한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운영 시스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중심주제	핵심범주	하위범주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삶	여성 장애인의 교육 경험	장애인복지관에서 수강한 프로그램
		비장애인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장애인의 이중차별	사회·문화적 및 교육적 측면
	잘살론과의 적용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과 평생교육의 관계

2. 범주적 내러티브의 내용과 해석

1)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교육 운영 현황

(1) 평생교육팀 교육 운영 목적 및 역할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의 역할로 ‘가’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웰빙을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사업 운영을 복지관에 국한되어 운영하지 않고 지역사회 간 연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증진, 사회 참여율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의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는 ‘가’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취미 및 전문자격취득 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꽃차소믈리에자격 과정, 미용, 바리스타, 토탈/라탄/한지 공예, 꽃자수, 원예 등의 프로그램과 자기 능력 및 자존감 향상 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 장애인 간 정서적 지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질문: 자존감 향상 수업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맞는 화장법이라든지 머리 스타일링 방법, 자기한테 맞는 퍼스널 컬러 등을 찾아가지고 자기를 가꾸는 거를 배우는 거였거든요...(중략). 심리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참여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만들기로 표현을 해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 걸 이제 점차 회기가 넘어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바꾸고 나누면서 그런 걸 좀 해 소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3) 평생교육 운영상의 한계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운영 시스템

평생교육팀 운영 목적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증진, 사회 참여율 향상 등을 위해 교육 담당자는 여러 프로그램 기획 및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 대상의 성장을 위한 커리큘럼을 계획하는 데 있어 복지관 운영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습 대상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

사실 이 스피치 교실 아까 기획 됐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참여를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건 있었습니다(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운영 담당자는 여성 장애인 대상 스피치 교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이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성 장애인의 욕구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여성 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욕구 조사를 통해 여성 장애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활동이나 건강 유리 및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학습 대상의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나,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고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 및 아쉬움이 있다.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또한 평생교육팀 운영팀장은 평생교육사업 및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지정과 지정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저희 재원이 다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 안에 평생교육사업비라고 저희가 일부

따로 측정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있고요.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 …(중략). 수업은 보통 최소 7명이 되어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해드리고 싶지만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하려면 강사비부터 운영비까지 예산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 7명 이상은 있어야…(중략)평생교육팀 운영팀장).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인터뷰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대부분 프로그램 강사는 외부 강사 초청으로 운영된다. 학습 대상이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강사 섭외가 어려우면, 혹은 좋은 강사를 섭외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에 차질 및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평생교육의 경우 대부분 외부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만약 외부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진행되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줄어들게 되고 자부담 사업으로만 진행하게 되어 강사를 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강의는 대부분 외부에서 섭외를 하고 보조를 여기 복지관 직원분들이 하죠. 발달장애인분들 자립을 위해서 간단한 의류 정리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정도이고 전문적인 강사가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강사를 섭외할 때는 (복지관 평생교육팀이)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지요. 어느 강사가 잘하고 어느 강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싸움이고 어쨌든 그분들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 강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 조정하는 것도…(중략)(평생교육팀 운영 팀장).

매번 외부 강사 섭외를 해야 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황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적은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장애인 교육 진행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면 평생교육팀 운영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뇌병변 장애인이신데 뇌전증 발작을 한번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해 하셔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강사님이 진행을 못하시고…(중략)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직원은 대처를 하면 된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무 놀라셔서 수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평생교육팀 운영 팀장).

2)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삶

(1) 여성 장애인의 교육 경험

① 장애인복지관에서 수강한 프로그램

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수강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여성장애인 대상 스피치 교실’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기획 의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 운영되지 못했다.

(질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개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컴퓨터 배웠고요. 프로그래밍이랑 일러스트 같은 건 제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거를 배우면 제가 가르치는 데에는 부족하지만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비장애인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는 어려우니까 ‘언니가 이거 가르쳐 줄까’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중략) 여기 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은데 전 여기 선생님들이 무엇을 저희한테 가르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것도 진짜 잘한 거죠. 선생님들이 무엇을 배워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됐죠(여성 장애인).

② 비장애인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터뷰한 여성 장애인은 자신이 학습한 능력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의 강사 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강자가 장애인인데 강사가 비장애인인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비장애인 강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비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와서 했으며 체감적으로 더 느끼고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건 많이 느껴요. 거의 보면 비장애 강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인 강사들이 와서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용기를 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고 저도 그렇게 복지관에서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11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딱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특히 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되도록 당사자가 수업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 강사가 인권 교육을 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공감도 잘 안되었던 거예요...(중략) 한번은 영어 시간이었었는데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막 보이는 것처럼 질문하고, 고아인 학생에게 ‘가족이 몇 명이나, 누가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여성 장애인).

(2) 여성 장애인의 이중차별

① 사회·문화적 및 교육적 측면

앞서 비장애인 강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고 다르다’는 인식에서 연민 혹은 혐오의 상황이 나타난다.

부족했던 건 제가 뭔가를 못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막 해주는 거 그런 거요.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자기네가 대신 만들어주면 기분이 안 좋죠...(중략) 제가 시장에 가면 지금도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지 왜 나오냐’고 해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중략)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2층인 거예요. 계단이 엄청 많은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등록을 하고 한 달가량 다니고 못 다녔어요(여성 장애인).

(3) 잘살론과의 적용

①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과 평생교육의 관계

여성 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와 섬너의 잘살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를 시작할 때의 연구 목표는 ‘직업 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배움 욕구 해소’만으로도 충분히 잘살을 영위할 수 있었다.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사회활동과 경제 활동 등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자신감 충족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질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경제적 혹은 생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신 게 있나요?) 엄청 됐죠. 일단 저는 현재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제가 그거 다 했어요. 전국 일주랑 스카이다이빙처럼 남들이 안 해본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뿌듯한 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 내가 수백 군데 학

교를 계속 다녔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아직도 저를 보면 ‘나 저 쌤한테 배워’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중략) 전 여기(장애인복지관) 들어왔을 때가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부터 이용을 했고, 그때 왜 이용을 했냐면 애들 병원에 데려가는 게 힘들어서 지원받으려고 복지관에 왔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아복지학과하고 사회복지학과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려면 유아복지가 필수예요. 그 전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배워야 한다고 느꼈어요(여성 장애인).

또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현 사회 배경으로 지식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과 노동시장이 고학력과 고숙련 기술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취업구조가 증대하다 보니 단기간 고용계약제, 변형 근로계약 증가 등 다양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역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센터 수준의 직업훈련 교육, 경력개발 촉진,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은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 자아실현의 기회를 충분히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평생교육 조직은 개방적, 자율적, 상호의존적인 협력체계를 지녀야 하며, 개인은 창의적, 전문적, 통합적 안목과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여성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 변화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일이며,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전공 영역의 다양화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제공 확대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장애인 직업교육은 직업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직업의식 함양 교육, 즉 두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센터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비교적 여성 장애인의 경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은 보다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사 자격, 지도사 양성 측면에서는 먼저 수업을 듣고 자격을 취득한 다음 강사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프로그램은 소물리에 작용 과정이 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다 배우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강사로 경제활동이나 경력개발 등 직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뭔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워져서, 내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취미반으로 운영할지 예산이나 계획 등 정확한 확신이 없어서 강사로 되시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취미반으로 운영하고 싶고, 거기에 이제 보조 봉사로 활동한다든지 이렇게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중략) 그리고 여성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자격취득 과정이 있고 차별되게 구성하려 하는데, 자격 취득 과정의 취지 자체가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우드버닝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취득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강사로 활동해도 될 만큼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연계해 드리려 했는데 여러 지원 등의 문제로 취업 연계까지는 안 됐던 좀 아쉬운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V. 결론

여성 장애인은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진심으로 몰두하여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 장애인은 가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나를 위한’ 흥미와 관심을 모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평생교육을 삶과 동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일련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법은 사회 전반에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확산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많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접근 기회를 제고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복지와 재활의 개념이 크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평생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 장애인이 대부분에 불과하다. 반복적으로 기존 교육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인간 존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기존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평생학습 사회 및 정책의 프로그램 일부는 개개인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인 2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운영총괄(팀장), 평생교육팀 내 여성교육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여성 장애인 총 8명으로부터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 이중적 차별구조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삶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실제 운영 현장 현황 관련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도출되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인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차별 구조를 가진 사회에 속해 있다.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삶 전체 영역에서 이루어짐을 볼 때,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 분야에 한정되어 다루어지기보다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의 ‘기본적 및 가치적’ 충족과 섬너의 ‘주체성’을 지님으로써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이트가 강조한 ‘활

동', '가치', '성공', '전심'은 여성교육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테면, 여성 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하고, 그 결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전심'으로 몰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섬너가 말하는 '주체-관련성'과 관련하여 각자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흥미, 경향, 감정에 따라 자기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

여성 장애인이 '여성'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잘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과제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여성 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기회 및 사회 진출에서 여성 장애인은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결혼·출산·육아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함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내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필요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전문자격 취득 및 경제 활동과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민희. (201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 분석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발방향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연구, 2(3), 59-89.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https://www.law.go.kr/법령/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 권정숙, 정여주. (2015). 지역평생학습사업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지향점.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6), 305-315.
- 박원희. (2002). 重度·重複 障碍人 餘暇活動 프로그램의 方向.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배화옥, 김유경. (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55-76.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http://www.mohw.go.kr>.
- 오혜경.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 이지현, 임현정. (2016). 윤리학과 교육철학에서 '잘삶'의 의미와 역할. 한국교육철학회, 38(4), 79-103.
- 이지현, 임현정. (2017). 화이트의 '잘삶'의 의미와 특성. 교육철학연구, 39(1), 51-74.
- 임소연, 이진숙.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여성의 돌봄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7(2), 533-559.
- 전혜숙. (2009). 경제활동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 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2(1), 57-77.
- 정정희. (2022). 여성장애인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인문사회 21, 13(1), 2635-2649.
- 통계청. (2022).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한국교육개발원. (2003). 한국교육개발원 제18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3512>.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 분석. https://koddi.or.kr/data/welfare_view.jsp?brdNum=2301085&brdTp=&searchParamUrl=brdType%3DWELFAR

E%26amp%3BselBrdProgSt%3D%26amp%3Bpage%3D1%26amp%3BsearchKeywor
d%3D%26amp%3BpageSize%3D20%26amp%3BsearchType%3DBRD_TITLE.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평생교육 참여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E075&vw_cd=MT_ZTITLE&list_id=D3_003_001_005&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25EB%25B3%25B5%25EC%25A7%2580%2520%253E%2520%25EC%259E%25A5%25EC%2595%25A0%25EC%259D%25B8%25EC%2582%25B6%25ED%258C%25A8%25EB%2584%2590%25EC%25A1%25B0%25EC%2582%25AC%2520%253E%2520%25ED%258C%25A8%25EB%2584%2590%2520%253E%2520%25EC%259E%2590%25EB%25A6%25BD%25ED%258F%2589%25EC%2583%259D%25EA%25B5%2590%25EC%259C%25A1%2520%25EC%25B0%25B8%25EC%2597%25AC%2520%25ED%2598%2584%25ED%2599%25A9.

Sumner. (1996). Welfare, Happiness and Ethics. Oxford: Clarendon Press.

Nosek, M. A., & Hughes, R. B. (2003). Psychosocial issues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The continuing gender debat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6(4), 224-223.

White J. (2013). Education and Well-being.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540-550.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	-----------------------	----------------------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actical Task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Independent Well-being of Women with Disabilities

Kim Do Kyoung*·Han Tae Kyung**

Women with disabled have to highly involved in what they want and need to do activity that can give much happiness which is valuable component in one's well-being. Repeatedly, Women with disabled need to raise the ability which is finding the own interest and concern. By this process, going life-long education with a life is inevitable. This research is mainly focusing on life-long education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current state of educational support program for the women with disabled to vitalize the life-long education, which can finally elevate the quality of life of the women who faced the double discrimination. Researching method is about reviewing the Report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roject to suppor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John White and Sumner's academic papers and degrees related to the theory of well-being and visiting the site to interview the manager and disable women. Finally, based on the lasting result of this study, suggesting the practical tasks of the genuine education operation site for life-long education experience aiming for independent well-being of the disabled women.

Keywords : Women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Independent Well-being, Double Discrimination, Educational Support Project,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